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(위성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585

발의연월일 : 2021. 1. 22.

발 의 자 : 위성곤·윤재갑·홍문표

이개호 · 김승남 · 서삼석

최인호 · 이상직 · 이해식

오영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는「산림조합법」 및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자연휴양림 등 산림사업을 수행해 오 고 있음.

그러나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사업 중 건축공사가 포함된 사업의 경우 건설업을 등록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하나, 비영리법인의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었는 한 건설업 등록이 불가하여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.

현행법은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사업의 조경식 재공사업에 한정하여 지역조합 및 중앙회가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, 건축공사업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개선하도록 함(안 제11조제 3항).

법률 제 호

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라 하는 조경사업과 휴양림 조성 등 산림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사업은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건설업으로 한정하며, 그 업종과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개 정 햀 아 제11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・ 제11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・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③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제46조 ③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라 하는 조경사 및 제108조에 따라 하는 조경사 업은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업과 휴양림 조성 등 산림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200제곱미터 건설업으로 한정하며, 그 업종 과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이하의 건축사업은 「건설산업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기본법」에 따른 건설업으로 한 정하며, 그 업종과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<u>정한</u>다. ④·⑤ (생 략) ④·⑤ (현행과 같음)